

시 민

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건축기획과-21730 | 주무관 | 건축계획팀장 | 건축기획과장 | 주택기획관 | 주택건축본부장 |
| 결재일자 | 2020. 11. 19. | 김성화 | 박신규 | 박순규 | 이진형 | 11/19 김성보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 | | | | |
| 방침번호 | | 협 조 | 주무관 | | 박광렬 | |

- 2020년도 제17차 -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
2020. 11.

주택건축본부
(건축기획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| 구 분 |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| 검토 완료 | 해당 없음 | 비 고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책의제형 성 | 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| 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</p> <p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정책수립 | 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| 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</p> <p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정책집행 | 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과급효과 분석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| 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정책홍보 | 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기타사항 | 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<p>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
- 2020년도 제17차 -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

- 일 시 : 2020.11.10.(화) 14:00 ~
- 개최장소 :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
- 안 건 : 7건(신규4건, 변경1건, 보고2건)

| 연번 | 사 업 명 | 위 치 | 용 도 | 층 수 (상/하) | 심의결과 | 심의 구분 |
|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개발사업 (강동구 건축과) |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(35,916㎡) | 판매시설,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| 21/6 | 원안의결 | 경관+건축 (보고) |
| 2 | 서초동 1595-3번지의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(서초구 건축과) | 서초구 서초동 1595-3번지의외 2 (1,546㎡) | 오피스텔(418호) | 23/4 | 조건부보고완료 | 경관+건축 (보고) |
| 3 |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(주거사업과) |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(124,270.3㎡) | 공동주택(2,356) 및 오피스텔(25) | 27/2 | 조건부의결 | 건축 특별건축구역 (변경) |
| 4 |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(강서구 건축과) |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1블럭 (31,827㎡) |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| 20/5 | 보류의결 | 경관+건축 (신규) |
| 5 |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(강서구 건축과) |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2블럭 (20,812㎡) |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| 13/7 | 보류의결 | 경관+건축 (신규) |
| 6 |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-1블럭 (강서구 건축과) |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-1블럭 (15,238㎡) |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| 15/5 | 보류의결 | 경관+건축 (신규) |
| 7 |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-2블럭 (강서구 건축과) |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-2블럭 (14,847㎡) | 업무시설 판매시설 | 12/7 | 보류의결 | 경관+건축 (신규) |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| | | | |
|--|---|------|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개발사업 /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1 | 심의결과 | 원안의결 |
| 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, 아래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<p>< 공통사항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: 11.21%(태양광(PV) 445.5kW, 지열 6,859.28kW, 집광채광 1,889.70㎡) 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. 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 계획 수립 바람. 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'불필요한 시설'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. 5.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 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 | | | |

2020.11.10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| | | | |
|--|---|------|--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사촌동 1595-3번지의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/ 사촌동 1595-3번지의 2필지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2 | 심의결과 | 조건부보고완료 |
| 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 | | |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| | | |
| 〈 건축 분야 〉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 | | | |
| ○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 배관이 전이보와 간섭되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, 만약 그럴 경우 전이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에 상세히 반영하기 바람.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 | | | |
| ○ 오피스텔 N07, N08세대 출입문의 설치 위치는 맞은 편 세대의 출입문과 상충되지 않도록 피난방향으로 조정 바람. | | | |
| ○ 피난계단을 통한 TPS, 보일러실의 출입문 설치를 지양하고, 부득이한 경우 TPS실의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 바람, 비상용승강장의 갑종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ST(스모크타워)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제연댐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조정 바람. | | | |
| ○ 피난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 수정 바람. | | | |
| ○ 지하2층 AV실은 점검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 바람. | | | |
| ○ 오피스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SP헤드는 외부 창문으로부터 0.6m이내의 위치에 우선 배치 바람.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 | | | |
| ○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주차장 진출입 동선에 대하여는 대안으로 반영하기 바람. | | | |
| - 계속 - | | | |

2020.1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| | | | |
|--|---|------|--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사촌동 1595-3번지의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/ 사촌동 1595-3번지의 2필지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2 | 심의결과 | 조건부보고완료 |
| 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 〈 공통사항 〉 | | | |
| 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. 가.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: 10.97%[태양광(PV) 16.38kW, 지열 30kW] | | | |
| 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. | | | |
| 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 계획 수립 바람. | | | |
| 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'불필요한 시설'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. | | | |
| 5.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 | | | |
| 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 | | | |

2020.11.10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| | | | |
|---|--|------|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북이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서대문구 북이현동 520번지 일대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3 | 심의결과 | 조건부의결 |
| [심의 내용] 건축 심의, 특별건축구역 지정 | | | |
| 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
| 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| | | |
| 〈 특별건축구역 지정 〉 | | | |
| ○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시 115동으로 인해 110동 일부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불리해지므로 주동 배치 또는 세대 계획 개선 바람. | | | |
| ○ 「건축법」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정함. | | | |
| 〈 건축 분야 〉 | | | |
| □ 건축계획 | | | |
| ○ 기부채납하는 공공청사와 중앙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은 대지레벨 차이를 이용한 입체적 보행동선계획으로 개선 바람. | | | |
| ○ 116, 201동, 207동 등 지상15층 내외의 중저층 주동과 지상20층 이상의 고층 주동이 면한 경우 비례를 고려하여 중저층부 디자인계획 개선 바람. (15층의 경우 5개층의 저층부 입면계획은 과다해 보이므로 고려 바람) | | | |
| ○ 각 주동 지상1층의 벽식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개선하여 지상1층 공간을 주민공동시설 또는 개방감 있는 휴게 공간으로 계획 바람. | | | |
| ○ 지하주차장의 자연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채광창 등 설치 바람. | | | |
| ○ 아동의 보호·감독을 위해 어린이집 현관 부근에 교사실 등을 배치하고, 인접한 유아놀이터에는 영아(0세~3세미만) 놀이기구 또는 놀이 공간을 보완하여 영유아놀이터로 계획 바람. | | | |
| ○ 제출된 ‘소형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이행각서’ 이행 바람. | | | |
| ○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. | | | |
| - 계속 - | | | |

2020.11.10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| | | | |
|--|--|------|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북이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서대문구 북이현동 520번지 일대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3 | 심의결과 | 조건부의결 |
| [심의 내용] 건축 심의, 특별건축구역 지정 | | | |
| < 건축 분야 >(계속)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(계속) | | | |
| ○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(30%)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.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 | | | |
| ○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 배관이 전이보와 간섭되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, 만약 그럴 경우 전이보 단면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에 상세히 반영하기 바람.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 | | | |
| ○ 2009년 최초 건축심의를 완료된 건축물이나, 2009년 이후 소방법 기준으로 설계되도록 권장하며, 특히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 충전구조와 내진설계 적용에 대하여 검토 바람. | | | |
| ○ 207동, 208동, 209동 소방차 통행로의 회차가 가능하도록 조정 바람. | | | |
| ○ 기계실과 저수조실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변경하고, 출입구 앞의 주차라인 이동 바람. | | | |
| ○ 지하5층~지하1층 지하주차장 층간 방화구획 바람. | | | |
| ○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바람.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| | | |
| ○ 풍동실험을 통해 통경축에 맞는 외부 바람길 및 연돌 현상 등을 검토·분석하여 실시 설계 바람. | | | |
| - 계속 - | | | |

2020.1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| | | | |
|---|--|------|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북이현2차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서대문구 북이현동 520번지 일대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3 | 심의결과 | 조건부의결 |
| [심의 내용] 건축 심의, 특별건축구역 지정 〈 공통사항 〉 | | | |
| 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. 가. 주거 : 친환경건축인증 최우수 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비주거 : 친환경건축인증 우수 등급,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주거 : 9.5%(태양광(PV) 1,186.98kW, 집광채광(실내루버) 5,239.54㎡) 비주거 : 107.27%(지열 4,688.75kW, 연로전지 100kW) | | | |
| 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. | | | |
| 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 계획 수립 바람. | | | |
| 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'불필요한 시설'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. | | | |
| 5.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 | | | |
| 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 | | | |

2020.11.10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1블럭 |
|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2블럭 |
|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3-1블럭 |
|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3-2블럭 |
| 의결번호 | 2020-17-4 2020-17-5 2020-17-6 2020-17-7 | 심의결과 | 보류의결 |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- 아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건축(소)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건축 분야 >

건축계획

- 공항철도 등 주변 교통시설과의 동선 연결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고, 광장~공공보행통로~연결녹지간의 연결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단지 계획 검토 바람.
- 각 블록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.
 -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바람.
 - CP3-2의 업무시설은 MASS의 다양성을 통한 입면변화계획 개선 바람.
- 지하1,2층의 상업시설의 규모에 비해 공공보행통로의 개방된 부분이 협소하여 화재 등 재난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.
- CP2블럭과 CP3블럭을 하나의 단지로 건축계획이 가능한 지 검토 바람.
 - 마곡 중앙로(12m)를 지하화하고, 지상부분은 공공보행통로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.
 - CP2블럭 지상1층과 CP3블럭 지상1층 부분의 사이의 상권활성화를 고려하여 조정녹지 최소화 또는 위치 조정 바람.

- 계속 -

2020.1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1블럭 |
|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2블럭 |
|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3-1블럭 |
| | 마곡MICE복합단지 | 특별계획구역 | 건설사업 CP3-2블럭 |
| 의결번호 | 2020-17-4 2020-17-5 2020-17-6 2020-17-7 | 심의결과 | 보류의결 |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< 건축 분야 >(계속)

-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하층과 지상층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구체화하여 계획 바람.
- 판매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블록별 지상2층 연결통로를 설치 바람.
- □자형 배치로 노인복지주택, 생활형숙박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.
- CP3블럭→CP2블럭→CP1블럭을 연결하여 지하 공공보행통로 부분에 무빙 워크 또는 모노레일 설치검토 바람.(권장)
- 노인복지주택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을 조성하고 공용시설계획 추가 바람.
- 노인복지주택의 서측 입면에 대한 차양시설 계획 검토 바람.

구조

- 장스팬 구조에 대하여 안전성과 처짐 외에 진동에 대한 검토 바람.

환경

-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으로 휘도가 세서 생활숙박시설 등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.
- 지하7층까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환기문제 등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.

- 계속 -

2020.1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| | | | |
|--|--|------|------|
| 심의일자 | 2020.11.10.(화) | |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-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-2블럭 | | |
| 의결번호 | 2020-17-4 2020-17-5 2020-17-6 2020-17-7 | 심의결과 | 보류의결 |
| 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 < 건축 분야 >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 ○ CP2블럭도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 바람. 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 ○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지침으로 인한 건축의 한계성을 조경계획에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특화계획 검토 바람. [예를 들어 사업부지 밖의 서울식물원의 보타닉 가든으로서 성격을 사업부지 각 블록의 썬큰공간에 보타닉 가든적 형태 등을 표현하는 '식물전시가든(보타니쿰)' 형태의 도입을 권장함] 끝. | | | |

2020.1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